

기업인권네트워크, 한국 NCP 개혁모임, 발전대안 피다

일 자 2018. 3. 22
수 신 법무부장관
참 조 법무부 인권국장
제 목 제3차 NAP 기업과 인권 부분 시민사회 초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3차 NAP 기업과 인권 부분에 대하여 시민사회에서 작성한 초안을 보내드립니다. 3월 26일에 예정된 시민사회 간담회 진행 시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기업인권네트워크 사무국 박영아 변호사, 010-5058-5651, mashil049@gmail.com, 한국 NCP 개혁모임 사무국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붙임 : 1. 제3차 NAP 기업과 인권 부분 시민사회 초안. 끝.

기업인권네트워크*, 한국 NCP 개혁모임**, 발전대안 피다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 NCP 개혁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국제식품연맹IUF한국사무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붙임.

I. 전문

1.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위한 기준

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다국적 기업 등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활동의 보편화와 민간부문 비중의 증대로 기업활동의 인권에 대한 영향이 커져가고 있다.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인권영향에 대한 방지와 대응의 필요성은 여러 국제적 기준과 문서에 반영되어 있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는 2011. 6. 16.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UNGP)'을 승인함으로써 인권과 다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의 보고서가 제안하는 "보호, 존중과 구제" 프레임워크를 수용한 바 있다. UNGP는 첫째,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및 실현할 국가의 의무, 둘째,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특수한 기관으로서 관련 모든 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역할, 그리고 셋째, 권리와 의무에 상응하는, 침해 또는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 중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와 관련해서 기업활동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식별·평가, 예방·완화 및 인권영향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위한 이행과정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 점검 및 실천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 기타 국제협약 및 기준

한편, 유엔의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2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국가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국가가 사회권규약에 따라 기업에 의한 사회권 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UNGP를 반영한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또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OECD 각료이사회는 2000/2011년 결의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OECD 회원국은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2.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정부는 UNGP를 비롯한 국제기준 및 협약에 따라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UNGP이행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증진시킬 것임을 약속한다. UNGP는 기업경영을 지도하는 원칙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UNGP를 준수할 것임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 UNGP 를 반영한 기업 인권정책의 수립, 공개 및 결의
- 기업활동의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하며, 완화하고, 인권에 대한 영향에 대처하는 방식을 책임지기 위한 인권점검 및 실천의무 이행 절차 도입
- 기업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제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구제절차의 도입
- 사업의 설계 및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때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참여를 보장하고, 특히 원주민과 여성 등 특정집단에 주의를 기울이며 언어 등 적극적 참여에 대한 잠정적 장애를 고려한 방법에 의할 것
- 공급사슬에 속한 국내외 기업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준수 감시 및 지원
- 여하한 상황에서도 i) 어디에서 활동하든 관련된 모든 법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존중하고 ii) 충돌하는 요청에 직면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법을 강구하며, iii) 어디에서 활동하든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여나 초래의 위험을 준법의 문제로 다룰 것

II. 국가의 보호 의무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표명 및 교육홍보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

가. 과제의 취지

-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 노력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정부 기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기업의 활동지역, 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시적으로 공표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 UNGP

2. 국가는 해당 영토 또는 관할권내 모든 기업들이 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 중해야 한다는 기대를 명확히 표명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정책

1) 정부는 신문, 홈페이지 등 인터넷, 소셜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기업의 인권 존 중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부의 기대 표명(선언)

(가) 대한민국 영토 또는 관할권 내의 모든 기업은, 그 규모나 활동장소에 상관없

이, UN 이행원칙에서 정의된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을 이행

(나) 기업은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회사나 공급회사 등 공급망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다) 정부는 기업들이 인권준중책임을 다하도록 필요한 지원과 법률·정책·제도 등 정비

2)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정부의 기대에 관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실시

3. 인권영향평가의 도입

(법무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재정부)

가. 과제의 취지

- 인권영향평가는 정부와 기업의 사업 실시에 앞서서 사업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평가를 하는 작업으로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임.
- 인권영향평가는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어 오고 있음. 광주광역시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2017년 10월에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18년에 도입을 결정하였음.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를 법률차원에서 정부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전 영역으로 확대 실시 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 유엔 사회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사전질의서(List of Issue)

6. 기업이 경제사회문화적권리를 존중하도록 하고, 국내외 기업 활동, 특히 채굴 부문과 토지수용을 하게 되는 상업적 활동에서 ‘인권실천과 점검의무(due diligence)’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입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당사국이 개발원조사업이나 해외에서 활동예정인 기업에게 요구하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 유엔 사회권위원회 권고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망(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를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하라.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 구체적 정책

1) 인권영향평가 도입

- 정부와 공기업 및 공공기관 사업에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공적개발원조 사업에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해외자원개발법에 의해 정부 지원을 받는 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 인권영향평가 시행기업에 대해서 공공조달 및 공적자금 지원시 인센티브 부여

2) 인권영향평가 전문 인력 및 기관 구축

-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대책사업으로 해당 인력 육성사업 지원
-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독립기구 설립 혹은 인증제 도입
- 20대 국회 회기 중에 인권영향평가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2.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제도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가. 과제의 취지

- 2014년 국가인권위 「인권경영 실천, 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당시 117개 기관 중 115개 기관이 권고를 수용함. 현재 인권위는 지방정부 공기업까지 확대하여 인권경영 적용권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현재 인권경영 제도화의 흐름은 「인권경영헌장」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정도이며,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천점검의무 수행 등을 통한 실질적 인권경영 이행체계구축은 미흡한 상황 (현재 25개 공공기관/공기업이 대외적으로 인권경영헌장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짐).
-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인권위가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해외 문헌 번역 및 보급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소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음.
- 한편 2018년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윤리경영’(비계량 3점) 평가를 실시하기로 개정됨. 윤리경영의 세부 평가항목에는 “인권교육,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활동”을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인권경영 체계구축 및 제도화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에 대한 두드러진 변화는 더디다고 할 수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 ‘인권경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1)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2014. 09. 25)

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권고 (2016.02.25.)

다. 구체적 정책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내 ‘인권경영’ 평가항목 별도신설 구성

- 윤리경영 내 세부항목으로 인권경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인권경영 평가항목 신설이 요청됨.
- 인권경영 비계량 평가 항목에 인권경영위원회, 인권영향평가·인권실천점검의무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정 등의 평가요건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비계량 평가체계의 강화가 요청됨.

2) 공기업·공공기관의 사업별/전사적/공급망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단계적 시행

3) 정부는 공공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장

4) 공기업·공공기관의 비사법적 구제절차 설치

5) 공공기관 내 인권경영 직무교육, 인권경영문화 확산

4. 인권을 고려한 공공조달

(조달청, 행정안전부)

가. 과제의 취지

1) 정부는 조달활동을 통하여 기업들과 다양한 상거래를 맺으며, 기업에 대하여 막대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2)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구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달시장을 통하여 중소기업 육성, 환경친화적기업육성등사회적목적및정부정책을시행해왔던바,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3)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공조달의 기업 선정 지표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조달에 있어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공공조달’ 관련 규범

[국내법]

1.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 조례]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국제]

1. Directive 2014/24/EU on public procurement
2. Directive 2014/25/EU on procurement by entities operating in the water, energy, transport and postal services sectors
3. Directive 2014/23/EU on the award of concession contracts

다. 구체적 정책

- 1) 공공조달 참여 자격 평가에서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률 개정
- 2) 인권 침해 기업은 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도록 관계법률 개정
- 3)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기반 계약제도로 전반적인 기조를 수정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정비

5. 인권을 고려한 공적개발원조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가. 과제의 취지

- 수출입은행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원조 자금을 지원 받아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인권, 환경 및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 등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함.
- 한편, 개발원조 결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절차가 배제되어 있어 의견수렴을 위한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 DAK(Development Alliance Korea) 가이드라인 (2013)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관련 권고

[정부에 대한 권고]

70.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세이프가드와 관련, 시민사회와 협의하도록 장려하라.

다. 구체적 정책

1) 인권에 기반한 공적개발원조를 위한 '인권가이드라인' 수립 및 실행

- 분야별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현재 정부가 수립한 협력대상국별 국가협력전략(CPS)의 국가 상황 분석 시, 인권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화 필요.

2) DAK 가이드라인 준수

- 무상원조 다자간 파트너십으로 출범한 DAK(Development Alliance Korea)에서는 민관협력(PPP) 방식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이해관계자(CSO, 기업, 학계 등)의 책무성 증대를 위해 가이드라인(2013년)을 마련함.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필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함.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인권 전략 수립

- 현재 ECDF 사업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영문본으로만 공개된 세이프가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책임을 현지 정부에 전가하고 있어서 세이프가드 역할을 하기 어려움. 현재 세이프가드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 인권영향평가 전면도입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포함하는 공적개발원조에 통합 적용될 인권기준과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4) 국제개발협력 인권역량 강화 교육 도입

-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이해도와 인권 정책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담당하는 자를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및 기업 담당자, 해외 파병 군인, 봉사단원 등 모든 관련자에게 인권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필요함.

6. 인권을 고려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가. 과제의 취지

- 공적금융기관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 2000년대 후반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이 비재무적인 요소(환경-E/사회-S/지배구조-S)를 고려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사회책임투자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됨.
-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금융기관인 국민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에 금융 지원을 계속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투자관행을 이어오고 있음.
-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이내에 국민연금의 스투드어십 코드 도입을 천명하고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로드맵이 공개되지 않음.
- 현재 개정 절차를 밟고있는 국내 ESG 관계법령은(자본시장법, 한국투자공사법 등) 금융기관과 기업의 자율공시에 의존하고 있어 ESG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금융지원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 노르웨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은 NAP에 Finance & Banking sector를 포함해 금융기관이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ESG를 고려해 투자하는 정책을 이행하고 있음.
- 한국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NAP에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하고 관계법령을 강화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 ‘사회책임투자’ 관련 법률

1. 「국가재정법」
2. 「국민연금법」
3. 「산업발전법」
4. 「자본시장법」
5. 「한국산업은행법」
6. 「한국수출입은행법」

다. 구체적 정책

○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 1)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책임투자 정보 의무 공시(국가재정법 개정)
 - 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정도 및 이유 공개
 - ESG 지표를 반영한 기금 운용 평가 공개
- 2) 투자 대상 기업의 ESG 정보 의무 공시(자본시장법 개정)
 - 투자자들이 사회책임투자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의 정보공개 의무화 필요
- 3) 국민연금 등 금융기관의 스투드어십코드 도입 참여 유도 정책 도입

- 2017년 12월 기준, 17개 기관에서 스튜드어십코드 도입. 국민연금은 2018년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힘.

○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연루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 제한 관련

1) 환경파괴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제적으로 투자 제외 대상으로 지정되는 산업에 대해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 노르웨이 국부펀드 및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에서는 석탄 사업에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2) 공적금융을 지원받는 기업이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문제에 연루 돼 국내외에서 문제시 될 경우 관련부처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인권 실천 및 점검의무를 이행하고 금융지원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

7. 다자간/ 양자간 국제기구/ 국제협정 관련 정부의 역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가. 과제의 취지

- 국가가 다자간/양자간 국제기구/협정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당사국의 인권보호 의무 수행을 제한하지 않고 기업의 인권준중책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관련 국제기준, 권고 등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정 등의 체결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기존 국제기준 등이 충분히 고려, 반영되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ILO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
- UN 글로벌 콤팩트
 - UN 인권기구 권고 (조약기구 권고, 유해물질특보, 기업인권워킹그룹 권고)

다. 구체적 정책

1) 기존 혹은 향후 가입/ 체결될 다자간/ 양자간 국제기구/ 국제협정에서 정부의 인권보호 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장치나 규정이 없도록 할 것

2,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기존 기업인권 관련 기준이 책임과 구제절차의 측면에서 모두 국내에서 실질적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정책, 관행을 개선할 것

3) 기존 혹은 향후 체결될 다자간/ 양자간 국제협정(특히 무역협정)에서 인권, 노동, 환경,

부패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제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UN 인권기구 권고 등이 실질적으로 논의, 이행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

5) 다자간/ 양자간 국제기구/ 국제협정 논의 시 기업과 인권 문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 의견 개진을 할 것

6) 강제된 아동의 노동력으로 생산된 상품들에 대한 수입을 방지하고 수입되는 상품이 아동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무역협정과 국내법 준수를 위해 상품의 출입을 감시할 것

II.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8.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인권 실천 및 점검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가. 과제의 취지

-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 선언> 등 기업과 인권을 다루는 국제적인 기준은 인권 실천 점검 의무를 기업의 해당 사업장에 국한하지 않고 공급사슬 및 사업관계 전반에 걸쳐 지우고 있음. 기업은 자신의 공급사슬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사업 수행의 모든 부분에서 인권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문제를 처리해야 함.
- 그러나 2017년 방한한 UN 기업과인권 실무그룹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이러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인권침해의 위험은 공급사슬 하층으로 갈수록, 공급사슬이 해외에 뻗어 있을수록 더 높아지지만,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공급사슬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는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지가 부족함.
- 이에, 기업의 공급사슬 전반에서의 인권 실천 점검 의무를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 2017년 UN 사회권위원회 관련 권고

18. (a) 당사국에 소재한 기업들과 이 기업들의 공급사슬(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을 포함하여 기업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들이 인권실천 및 점검을 시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수립할 것. 인권실천 및 점검의무란 기업들이 사회권규약의 인권을 위반할 위험들을 확인하고 예방하며 경감시키나, 사회권 규약상의 인권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회피하

거나 기업들의 결정이나 운영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기여하거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 2017년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관련 권고

[정부에 대한 권고]

64.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원청(lead companies)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라.

[기업에 대한 권고]

80. (정책 및 현장/운영 단계를 포함하여) 전 단위에서 기업의 가치사슬 전체와 해외 활동 관련 내용을 포함, 이행원칙을 인지하고 이행하도록 하라.

87.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공급망 전체에 걸쳐 인권 위험과 부정적 관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구하라.

다. 구체적 정책

○ 공급사슬 전반에서 인권 실천 및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

1) 기업이 국내·외 공급사슬(하청업체, 공급업체, 가맹점 등) 전반에서 국제 인권·노동·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기업활동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고 그 실행을 점검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할 것.

- 프랑스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영국 Modern Slavery Act, OECD 인권실천점검의무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수 있음.

2) 공급 사슬 내 인권·노동권·환경 침해 위험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을 밝혀내고 그 특성을 반영하여 원청 기업이 공급 사슬 전반에서 국제 기준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제공할 것.

-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등 UN 특별절차, 국제 노동·인권 단체, 국내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각종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구체 사례를 바탕으로 공급사슬 인권 침해 위험이 높은 산업 부문을 파악하고 그 위험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실시 필요.

3)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원청기업이 공급사슬 인권 존중을 위해 취해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것.

- 지침 마련을 위해 OECD의 부문별 인권 실천 점검 가이드라인 및 2018년 3월 채택된 책임기업경영을 위한 인권 실천 점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음.

9. 기업의 비재무 정보의 공시

(금융위원회)

가. 과제의 취지

- EU가 2014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정보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2018년 EU 각 회원국들이 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고 있음(프랑스, 독일 등)
- 하지만 국내의 경우 비재무정보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최근 의무공시제도를 반영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지만 상임위에서 합의된 대안은 자율 공시에 그치고 있음
- 인권점검 및 실천의무의 구체화로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업의 비재무정보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안), 법사위 계류

[국내]

1. 국가인권위원회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천·확산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 (2014. 09. 25)

[국제]

1. Directive 2014/95/EU on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별첨1]

2. UN지속가능증권거래서 이니셔티브(UN Sustainable Stock Exchange Initiative, SSEI)

3. 기타 비재무정보 공개 이니셔티브

- GRI, IR 등

다. 구체적 정책

1) 비재무정보 의무 공시를 위한 제도 도입

- EU 등 세계적 추세는 이미 비재무정보의 공시 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부과하고 있음.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재무정보의 공시 의무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인권증진 책임의 실현 측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함. 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 천명과 함께 구체적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 의무공시제도의 도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공시의무의 범위 및 대상 기업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지원책 또는 인센티브 등도 검토 필요함.

3)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의 마련

- 상임위에서 합의한 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율적이기는 하나 기업 내 사업보고서 내에 비재무정보가 반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비재무정보의 공시지침을 마련하여야 함. 공시지침에는 국제적인 기준과 함께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침 구성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10. 해외 진출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증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하 KOTRA),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가. 과제의 취지

-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사건은 주재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가 약한 국가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보다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해외 진출 기업들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바, 해외 공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
- 특히 분쟁지역의 경우, 기업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보다 주의깊게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또한 한국 기업이 인권 침해 사건에 연루가 되는 경우, 주재국 내에서 적절하게 구제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외 공관을 통하여 국내 구제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KOTRA 는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공적기구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현지에서의 기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에 KOTR 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정보제공 경로 및 교육 기회를 통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2017 사회권 심의 권고)

해외한국기업의 상당주의의무가 법적인 의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당주의의무는 그 한국기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급망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해외한국기업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눈감지 말고 일정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이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2015, 자유권위원회 심의 권고)

11.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영토 내를 비롯하여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동 규약에 명시된 인권 기준을 존중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 및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1, 아동권리 위원회 심의 권고)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업이 주민이나 아동의 권리 또는 인권에 관련된 영향 평가에 영향을 끼칠 때 사전에 충분히 동의 과정을 거친 외국 정부와 협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다. 구체적 정책

○ 해외 공관

1) 주재국의 인권 상황 및 관련 규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주재국의 특별한 인권 리스크에 대해 책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식제고
- 해외 공관 직원들이 주재국의 학계, 변호사, 노동조합, NGO, 인권옹호자들과 적극 협력하여 주재국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고
- 주재국의 인권옹호자를 지원
- 특별히 분쟁지역화될 우려가 있거나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위한 활동 안내서 개발·보급

2)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운영 현황 파악

- 해외 공관 진출업체의 노사분규, 집단적 갈등, 중대재해 등 이른바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장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함
- 이 때 UNGP 및 OECD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현지 노동조합, NGO, 인권옹호자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함
- 진행경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고

3)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 지원

- 주재국의 인권 리스크에 대해 책자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식제고
- 특히 분쟁지역 등일 경우 분쟁지역에 관한 규범들에 대해 소개
- 주재국의 법이 국제 인권법과 불일치하여 기업이 인권 존중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재국에 문제 제기
- 특별히 기업이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와 협력

4)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구제책 접근 지원

- 인권침해 피해자들에게 한국의 구제절차 - 사법제도 및 NCP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는 책자 비치
- 인권침해 등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통역 등 적극 지원
- 필요한 경우 현지 경찰과 적극 협력하여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한국으로 송부하여 사건 진행 조력
- 사건 진행을 위해 피해자 당사자 및 지원자들이 한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비자 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도록 지침 마련

○ KOTRA

1) 해외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시행

- 해외 진출 한국기업에게 배포되는 책자에 UNGP 및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에 대한 내용 포함 및 모범사례 포함
- 해외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UNGP 및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
- 한국 기업 및 진출국 의기업 협회, 산업별 모임 등 KOTRA를 통해 지원을 받는 단위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에 대한 교육 실시

2) 자체 CSR 사업에 기업 인권의 관점 반영

- 진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CSR 사업에 반인권적인 요소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음. 이에 CSR 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사업에 대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
- 평가를 바탕으로 CSR 사업 및 주요 사업에 대해 인권 점검 및 실천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및 개정
-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

IV. 구제책의 접근

11. 정부 기반 구제의 실효성의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가. 과제의 취지

-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정이후에, 해외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접근은 정부의 주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특히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NCP 운영 외에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NCP 역시, 2002년 설립 이후에 현재까지 한국 NCP에 진정된 약 25건의 진정에 대해서 조정 절차에 이른 것은 단 2건에 불과하며, 2건의 조정 역시도 실효적인 구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임.
- 2019년 상반기에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앞두고, 한국 정부는 NCP 개혁을 통하여 NCP가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절차에 접근하려는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사례

○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관련 권고

(b) 한국기업들의 국내외 활동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이 당사국의 사법적/비사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요구하도록 보장하라.

(d) 한국 NCP의 영향력과 투명성, 이해관계자참여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라. 이는 인권기준들에 따라서 국내연락사무소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국내연락사무소가 조정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감으로써 이뤄질 수 있다

○ 2017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관련 권고

1) 구제 접근성을 점검하여 기업 관련 인권피해를 다루는 사법적/비사법적 제도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라.

2)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법적 자문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3) 국내연락사무소(NCP)의 독립성과 가시성을 증진하고 인적/재정적 자원을 강화하라. 국내연락사무소의 권한을 더명확히 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확대하라.

○ 2018년 국가인권위 권고

- 시민사회·노동계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
- 이의제기 사건가이드라인 위반여부 확인 조치 등 최종성명 실효성 확보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 전자 정보 접근 및 자료 유지·체계화를 위한 기록관리 규정 마련

다. 구체적 정책

○ 해외공관에 한국기업 인권침해 대응 지침 마련

- 1) 해외공관에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교육
- 2) 해외공관 파견 공무원에 대해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안내(NCP 등) 및 상담과 관련한 업무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실시

○ NCP 개혁

1) NCP의 독립성 제고

- 총리실 산하의 별도의 위원회 구성 필요

2) NCP의 공정성 제고

-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공식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TUAC(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과
- BIAC(OECD 기업자문위원회)와 OECD Watch 의 한국내 가맹조직이 추천권을 가지고 위원 추천 하도록 함
- 정부위원 5명(위원장 1인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과 민간위원 6명(TUAC 한국내 가맹단체 2인, BIAC 가맹단체 2인, OECD Watch 가맹단체 2인)으로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 위의 인선절차 및 조정위원회 구성과 NCP 업무전반에 관해 현행 운영규정 개정 필요

3) NCP의 책임성 제고

- 현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민간기관이 맡고 있는 사무국 업무를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정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함

4) NCP 효과성 제고

- NCP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 강화

V. 이행 및 점검

12.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국회, 법무부, 외교부)

가. 과제의 취지

- 국가는 기업관행을 형성하는 정부 부처, 기관 및 여타 공공기관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실현할 국가의 의무를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관련 정보, 훈련과 지원을 제공해야 함.

나. 국내·외 기준 및 권고

(UN 기업인권 실무그룹 한국 방문 보고서, 2017. 5. 1.)

56. 정부와, 기업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정부 기구 간의 조율을 보다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실무그룹은 정부가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모든 국가들에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조율과 정책적 일관성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어떤 법, 규제, 정책 및 감시기구가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하고, 정부 및 비 정부 기반 구제절차로의 접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실무그룹은 사회의 모든 과정 및 분야에 있는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하는 정부 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바이다.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행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실무그룹의 지침에 따라 포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필요가 있다

62. 이행원칙에 따라 부정적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처리할 정부의 의무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채김에 관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라”

다. 구체적 정책

1) 기업과 인권 NAP 이행 점검을 위한 위원회 설치

- 기업관행을 형성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과 그 상급기관을 포괄하는 기업과 인권 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을 20대 국회에서 제정
- 위원회는 기업과 인권 NAP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함

2) 기업관행을 형성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 간 조율을 거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기관별 정책 수립

3) NAP 등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정책대상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마련

4) 기업과 인권 정책에 관련된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및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교육 훈련 제공

5) 정부는 기업과 인권 NAP의 이행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

6) FTA 등의 통상조약이나 정부와 기업간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인권보호 관련 규율과 규제를 위한 충분한 정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과 지침 마련